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3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태선 · 장철민 · 허영
허종식 · 이용우 · 김주영
정춘생 · 윤후덕 · 박민규
손명수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 · 돌봄 · 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

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사용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어야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8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사용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어야 한다.</u>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 -----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u>제67조제1항·제3항</u> ,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 ----- ----- ----- <u>제60조제8항, 제67조제1항</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